



서울회생법원 및 싱가포르대법원 간 양해각서

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대법원(이하 개별적으로는 “당사자” 혹은 “각 당사자”, 통칭하여서는 “당사자들”이라 한다)은 모두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의 모델법에 기초한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당사자들로서, 국제도산 절차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서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,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공고한 협력 증진의 가치를 상호 인식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[목적]

이 협약은 당사자들 간 공조를 장려함으로써 국제도산 절차의 효율성 및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 2 조 [기본원칙]

당사자들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 협약의 이행에 협력한다.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 3 조 [협력 사항]

제 1 조에서 말하는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.

1. 병행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
2.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
3.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

4.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

제 4 조 [효력]

이 협약은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. 이 협약은 조약이나 법령을 구성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소속 법관들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으며 현재 내지 앞으로의 법령이나, 법원들의 결정 및 내부규정을 대체하지도 않는다.


제 5 조 [효력발생 및 유효기간]

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, 그 효력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유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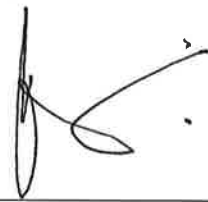
제 6 조 [개정]

당사자들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이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 서명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싱가포르공화국 싱가포르에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. 2018 년 5 월 16 일, 한국어와 영어, 각 2 통씩 작성된 본 협약서는 각 언어별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, 각 당사자가 각 언어별로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

이 경 춘
서울회생법원
법 원 장



스티븐 청
싱가포르대법원
항소법원 법관